

—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22일

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장학기금 수혜대상자를 학업성적 우수 저소득층 자녀 중·고등학생에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업성취를 통한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, 가난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학기금지급 대상자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생을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

라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
-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, 제1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지급 수혜대상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중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대학생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